(3쪽 중 제3쪽) 3.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⑨ 공제세액 비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14O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B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Q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 성 방 법 1.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a. ⑦란 중 ④ 감면세액(소득금액)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[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의 ◯113란의 금액을 말합니다]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의 ◯115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 b. 그 밖에 ⑤ 비과세, ⑥ 소득공제, ⑧ 세액감면,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 2.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: ⑤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 a.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+ (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)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 b.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+ (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)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 3.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. 4. 근거법조항 중 “구”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. 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